| 투자 위험 등급<br>2등급 [높은 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한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투자전략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화 K제조핵심PLUS증권 자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 K제조핵심PLUS증권 자투자신탁(주식)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한화 K제조핵심PLUS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6년 6월 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년 6월 12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10조좌까지 모집 [모집(매출) 총액: 10조원].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2026년 3월 22일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한화자산운용㈜ 본점, 각 판매회사 및 협회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한화 K제조핵심PLUS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총회 및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을 적용하지 않고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한화 K방산조선원전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됩니다.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이 정하고 있는 본래의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목 차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요약정보〉 기준일: 2026.06.01

## 한화 K제조핵심PLUS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EU218]

| 투자 위험 등급<br>2등급 [높은 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한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식 가격 변동위험,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종목),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섹터), 적극적 매매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한화 K제조핵심PLUS증권 자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 | |
|---|---|
| **투자목적 및 전략** | -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자투자신탁으로,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유동성 자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10% 범위 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br>- **모투자신탁[한화 K제조핵심PLUS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투자전략**<br>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합니다.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와 공급망 재편 흐름을 반영하여, AI 인프라, 반도체, 전력기기, 조선·방산·로봇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에 선별 투자합니다. 포트폴리오는 중장기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Core 전략과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Satellite 전략을 병행하여 구성합니다. 투자대상 산업 및 비중은 시장 상황 및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br>-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 특징상 비교지수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사후적 운용평가를 위한 참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참조지수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참조지수는 이 투자신탁의 단순 성과비교를 위한 것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반드시 아래 지수와 동일한 투자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익자에게 참조지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과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참조지수 : KOSPI 지수 100%<br><br>※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은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 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

**투자비용**

| 클래스 종류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및 비용 (단위 %) | | |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 | | | |
|---|---|---|---|---|---|---|---|---|---|---|
| | 판매 수수료 | 총 보수 | 판매 보수 | 동종 유형 총보수 | 총보수·비용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납입금액의 1.00% 이내 | 1.360 | 0.63 | 1.37 | 1.3600 | 238 | 383 | 535 | 863 | 1,836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없음 | 1.730 | 1.00 | 1.60 | 1.7300 | 177 | 364 | 559 | 980 | 2,230 |
| 수수료선취- | 납입금액의 | 1.045 | 0.32 | 1.05 | 1.0450 | 157 | 268 | 386 | 639 | 1,391 |

| | | | | | | | | | | |
|---|---|---|---|---|---|---|---|---|---|---|
| 온라인(A-e) | 0.50% 이내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없음 | 1.230 | 0.50 | 1.10 | 1.2300 | 126 | 258 | 397 | 697 | 1,586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직접판매(J-e) | 없음 | 0.810 | 0.08 | - | 0.8100 | 83 | 170 | 262 | 459 | 1,044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연금저축)) | 없음 | 1.430 | 0.70 | - | 1.4300 | 147 | 300 | 462 | 810 | 1,844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P(퇴직연금)) | 없음 | 1.380 | 0.65 | - | 1.3800 | 141 | 290 | 446 | 782 | 1,779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합성 총보수비용[피투자펀드 보수 포함])을 의미** 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5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세전기준)**

| 종류 | 최초설정일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 이후 |
|---|---|---|---|---|---|---|
| | | - | - | - | - |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2026.03.23 | | | | | |
| 참조지수(%) | | | | | | |
| 수익률변동성(%) | | | | | | |

* 참조지수: KOSPI 지수 100%
*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단위: 개, 억원)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형) (단위: %) | | | | 운용 경력년수 |
|---|---|---|---|---|---|---|---|---|---|
| | | | 집합투자 기구수 | 운용 규모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 김서영 | 1974 | 책임(매니저) | - | - | - | - | 131.38 | 60.83 | 12년 9개월 |

* 기준일: 2026년 3월 3일
*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 | |
|---|---|
| |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br>·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br>**·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br>·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주요투자 위험** | ※ 아래 투자위험은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고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
|---|---|
| **원금손실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므로 투자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 **주식가격 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므로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가치도 하락하게 됩니다. |
|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종목)** | 이 투자신탁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의 투자신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투자신탁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
|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섹터)** | 이 투자신탁은 일부 산업에 속하는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투자신탁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
| **유동성 제약 종목 일부 편입가능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 상 유동성이 부족한 특정 종목 등에도 투자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가격변동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환매대금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전략수행에 따른 주식시장과의 괴리 위험** |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 및 공급망 재편 흐름을 반영하여 특정 산업 및 국내 제조기업에 상대적으로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상이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 전반에 분산 투자하는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에 비해 특정 종목 또는 산업에 대한 가격 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 **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의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환매에 따른 위험** | 환매청구일과 환매대금결정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결정일까지의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

| | | |
|---|---|---|
| | | 의 예상하지 못한 가치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 | **펀드규모위험** |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이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매입 방법** | **· 15시 30분 이전에 수익증권의 매입을 신청한 경우**<br>: 수익증권의 매입을 신청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br>**· 15시 30분 경과 후 수익증권의 매입을 신청한 경우**<br>: 수익증권의 매입을 신청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환매방법** | **· 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br>: 환매청구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br>**·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br>: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 **환매 수수료** | 없음 | | |

| | | |
|---|---|---|
| **기준가** | **산정방법** |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br>- 1,000좌(1좌당 1원)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

**과세**

| 구분 | 과세의 주요 내용 |
|---|---|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 **수익자** |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 종류 C-P(연금저축), C-Pe(연금저축), J-P(연금저축), J-Pe(연금저축), S-P(연금저축) 수익증권 수익자(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류 C-RP(퇴직연금), C-RPe(퇴직연금), S-RP(퇴직연금)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한 과세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 및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 지위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table>
<tr><td>집합투자업자</td><td colspan="3">한화자산운용㈜<br>(대표번호: 02-6950-0000 / 인터넷 홈페이지: www.hanwhafund.co.kr)</td></tr>
<tr><td>모집기간</td><td>2026년 3월 22일부터 계속 모집가능</td><td>모집·매출 총액</td><td>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td></tr>
<tr><td>효력 발생일</td><td>2026년 6월 12일</td><td>존속 기간</td><td>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td></tr>
<tr><td>참조</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 colspan="3">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r><td rowspan="2">판매 수수료</td><td>수수료 징구(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5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 미징구(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5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 rowspan="5">판매 경로</td><td>오프라인</td><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r><td>온라인(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온라인 직접판매 (J-e)</td><td>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오프라인 직접판매 (J)</td><td>집합투자업자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로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r><td>온라인 슈퍼(S)</td><td>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 rowspan="2">기타</td><td>기관 (f)</td><td>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의 변액보험계약,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투자자 및 기금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고액</td><td>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 수익자로 제한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able></td></tr>
</table>

| | | | |
|---|---|---|---|
| | | (i) | |
| | | 랩<br>(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법 시행령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전신탁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통해 직접 매입하는 기관투자자가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개인연금<br>(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퇴직연금<br>(RP)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무권유<br>저비용<br>(G) |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whafund.co.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whafund.co.kr)

#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 펀드코드 |
|---|---|
| 한화 K 제조핵심 PLUS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EU218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EU219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EU220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 EU221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EU222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EU223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 EU224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EU225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 EU226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EU227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연금저축)) | EU228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연금저축)) | EU229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P(퇴직연금)) | EU230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C-RPe(퇴직연금)) | EU231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직접판매(J-e) | EU232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직접판매-개인연금(J-Pe(연금저축)) | EU233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EU234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연금저축)) | EU235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P(퇴직연금)) | EU236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직접판매-개인연금(J-P(연금저축)) | EX233 |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0조좌까지 모집(판매) 가능하며 1좌단위로 모집합니다. (1좌 = 1원, 원본액 기준) 다만, 모집(판매) 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모집예정금액까지 계속 모집(판매)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추가형 투자신탁으로 2026년 3월 22일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 펀드코드 |
|---|---|
| 한화 K 제조핵심 PLUS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EU218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EU219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EU220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 EU221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EU222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EU223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 EU224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EU225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 EU226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EU227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연금저축)) | EU228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연금저축)) | EU229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P(퇴직연금)) | EU230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C-RPe(퇴직연금)) | EU231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직접판매(J-e) | EU232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직접판매-개인연금(J-Pe(연금저축)) | EU233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EU234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연금저축)) | EU235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P(퇴직연금)) | EU236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직접판매-개인연금(J-P(연금저축)) | EX233 |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시행일 | 주요 변경 사항 |
|---|---|
| 2026.03.22 | 최초 효력발생 |
| 2026.04.07 | 펀드코드 기재오류 정정 |
| 2026.06.12 | J-P(연금저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직접판매-개인연금(J-P(연금저축))] 수익증권 신설 |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신탁계약의 종료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집합투자업자

| | |
|---|---|
| **회사명** |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 로 50 한화금융센터 63 |

| | |
|---|---|
| | (대표전화: 02-6950-0000) |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기준일: 2026.03.03)

| 구분 | 성명 | 생년 | 운용현황 (단위: 개, 억원)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수익률 (국내-주식형, 단위: %) | | | | 주요경력 및 이력 |
|---|---|---|---|---|---|---|---|---|---|
| | | | 집합투자 기구수 | 운용 규모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 책임 (매니저) | 김서영 | 1974 | - | - | - | - | 131.38 | 60.83 | - 운용경력년수: 12년 9개월<br>- 연세대 대학원(국제통상학)<br>- 삼성자산운용(6년)<br>- IBK자산운용(1년 4개월)<br>- 동부자산운용(1년 7개월)<br>- 한화자산운용(2014년 11월~현재)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당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다. 최근 3년간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 해당사항 없음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현황]**
- 한화 K제조핵심 PLUS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기준일: 2026.03.03)

| 구분 | 성명 | 생년 | 운용현황 (단위: 개, 억원)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수익률 (국내-주식형, 단위: %) | | | | 주요경력 및 이력 |
|---|---|---|---|---|---|---|---|---|---|
| | | | 집합투자 기구수 | 운용 규모 | 운용역 | | 운용사 | | |
| | | | |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 책임 (매니저) | 김서영 | 1974 | - | - | - | - | 131.38 | 60.83 | - 운용경력년수: 12년 9개월<br>- 연세대 대학원(국제통상학)<br>- 삼성자산운용(6년)<br>- IBK자산운용(1년 4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동부자산운용(1년 7개월)<br>- 한화자산운용(2014년 11월~현재)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당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5)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Class) |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 판매 수수료 | 수수료 징구(A)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5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수수료 미징구(C)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5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판매 경로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 온라인(e)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온라인 직접판매 (J-e) |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오프라인 직접판매 (J) | 집합투자업자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로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 온라인 슈퍼(S)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

| | | |
|---|---|---|
| | |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기관 (f) |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의 변액보험계약,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투자자 및 기금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고액 (i) |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 수익자로 제한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랩 (w) |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법 시행령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전신탁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통해 직접 매입하는 기관투자자가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개인연금 (P)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퇴직연금 (RP)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무권유 저비용 (G) |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투자신탁 / 자투자신탁 | 한화 K제조핵심PLUS증권 모투자신탁(주식) |
|---|---|
| 한화 K제조핵심PLUS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이하 |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중 법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 투자대상 | 취득한도<br>(투자신탁 자산총액 기준) | 투자대상자산 세부설명 |
|---|---|---|
| ①모투자신탁 수익증권 | - 100% 이하 |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은 "한화 K제조핵심PLUS증권 모투자신탁(주식)"수익증권을 말함 |
| ②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 - 10% 이하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0%를 초과할 수 있음) |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br>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 83 조제 4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br>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br>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

| | | |
|---|---|---|
| | |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 기 타 |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주) 상기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 ①이해관계인과의 거래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br>가.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함)<br>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한도 및 투자제한의 예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가.투자대상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의 가.투자대상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및 투자제한〉**

**- 한화 K제조핵심PLUS증권 모투자신탁(주식)**

**가. 투자대상**

| 투자대상 | 취득한도<br>(투자신탁 자산총액 기준) | 투자대상자산 세부설명 |
|---|---|---|
| ①주식 | - 60% 이상 | -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 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
| ②채권 | - 40% 이하 | -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단기사채(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를 포함하고, 사모사채, 주식관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
| ③어음 | - 40% 이하 |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
| ④자산유동화증권 | - 40% 이하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

| | | |
|---|---|---|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
| ⑤집합투자증권 | - 40% 이하 | -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
| ⑥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 이하 |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
| ⑦환매조건부매도 |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
| ⑧증권의 대여 |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 -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
| ⑨증권의 차입 | - 20% 이하 | - ①주식,②채권,③어음,④자산유동화증권,⑤집합투자증권에 의한 증권의 차입 |
| 기 타 |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br>-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br>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이내의 금전의 대여)<br>2. 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이내인 상품에 한함)<br>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br>-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가.투자대상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 하락일로부터 3개월(이하 "처분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br>- 상기에서 정한 처분기간 또는 연장된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가.투자대상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처분의무는 소멸합니다. | |

1) 증권의 대여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합니다.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증권의 차입 :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구 분 | 내 용 | 예외 |
|---|---|---|
| ①이해관계인과의 거래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br>가.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br>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 | | |
|---|---|---|---|
| ②동일종목 증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 예금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br>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br>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 79 조제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 · 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br>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br>라.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br>1) 투자자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 운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br>2)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그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하씩 각각 나누어 투자할 것. 다만,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경우 각각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고,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1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 | |
| ③집합투자 증권 |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 |
| |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 | |
| |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 | |

| | | |
|---|---|---|
| | 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
| |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
| |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
| |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
| |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
| ④동일법인 등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 ⑤파생상품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 |
| ⑥파생상품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 ⑦계열회사 발행 증권 |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가.투자대상의 ① 내지 ⑤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1개월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 가.투자대상의 ① 내지 ⑤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의 가.투자대상의 ⑥ 내지 ⑨, 나.투자제한의 ② 내지 ⑥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자투자신탁으로,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 유동성 자산에의 투자는 투자신탁재산의 10% 범위 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 모투자신탁[한화 K제조핵심PLUS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투자전략**

1)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합니다.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 및 공급망 재편 흐름과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경쟁력 변화에 주목하여, AI 인프라, 반도체, 전력기기, 조선·방산·로봇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에 선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특히 해외 수요 확대와 산업 내 역할 증대가 기대되는 핵심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2) 주요 투자대상 산업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와 공급망 재편 흐름을 반영하여, AI 및 전력 인프라 및 전략산업 및 공급망 관련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제조기업에 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 구분 | 산업 환경 | 산업 분야 | 주요 내용 |
|---|---|---|---|
| AI 및 전력 인프라 관련 산업 |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인프라 투자 확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흐름 | 반도체 | - AI 산업 확산에 따라 고성능 반도체 및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가 증가<br>- 반도체 설계와 생산의 글로벌 분업 구조가 심화<br>- 첨단 메모리 및 반도체 제조 역량을 보유한 기업의 역할 확대가 기대됨 |
| | | 원자력 | - 주요국의 전력 수요 증가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원자력 발전 확대 움직<br>- 원전 시공 경험 및 공급망 역량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수요 확대가 예상됨 |
| | | 태양광 & ESS |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가 증가<br>-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및 현지 생산 확대 흐름<br>- 배터리 및 전력 변환 장치 등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확대됨 |
| | | 전력기기 | - 주요국의 노후 전력 인프라 교체 수요가 확대<br>-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망 투자 증가<br>- 초고압 변압기 등 전력기기 수요 확대가 예상됨 |
| 전략산업 및 공급망 관련 산업 | 주요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및 산업안보 강화에 따른 공급망 | 방산 | - 일부 국가의 방위산업 생산 역량이 축소됨에 따라 무기체계 및 부품 분야에서 공급 제약이 발생<br>- 방산 공급망 협력 확대 움직임 |
| | | 조선 | - 일부 국가의 군함 건조 역량 약화로 건조 지연 사례가 발생 |

| | | | |
|---|---|---|---|
| | 재편 | | - 해군력 강화 수요 확대에 따라 함정 발주 및 유지·보수(MRO) 수요가 증가<br>- 해외 조선 협력 확대 흐름 |
| | | 로봇 &우주 | -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동화 및 로봇 도입 수요확대<br>- 차세대 제조 자동화 기술 개발이 진행<br>- 공급망 다변화에 따른 산업 협력 구조 변화 |
| | | 핵심광물 | - 핵심광물의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br>- 가공·정제 역량 확보 필요성이 부각<br>-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 |
| | | 바이오 | -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 움직임<br>-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의 해외 생산 거점 확보 확대<br>-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흐름이 지속 |

* 상기 산업 구분은 투자 이해를 돕기 위한 개념적 분류이며, 실제 투자대상 및 비중은 시장 상황 및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포트폴리오 구성방안

이 투자신탁은 Core 및 Satellite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Core 포트폴리오**<br>구조적 성장군<br>(약 70% 수준) | AI, 전력 인프라 등 중장기 산업 성장 흐름에 부합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산업 내 경쟁우위와 시장 지위를 확보한 기업에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 |
| **Satellite 포트폴리오**<br>도약 성장군<br>(약 30% 수준) | 수주 확대, 경쟁구도 변화, 신기술 도입 등으로 성장 국면에 진입하거나 산업 내 입지 변화가 기대되는 분야에 중·단기 관점에서 탄력적으로 투자 |

* 각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시장 상황 및 운용 전략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전략은 작성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시장상황에 따라 일정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신탁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은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 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2)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 특징상 비교지수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사후적 운용평가를 위한 참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참조지수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참조지수는 이 투자신탁의 단순 성과비교를 위한 것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반드시 아래 지수와 동일한 투자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익자에게 참조지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과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참조지수 : KOSPI 지수 100%

- KOSPI 지수 : 한국거래소(KRX)에서 산출 및 발표하는 주가지수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모든 보통주를 대상으로 시장 전체의 주가 동향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주식시장 지수입니다.

**(3) 위험관리 전략**

| 구분 | 주요 내용 |
|---|---|
| 위험관리체계 |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회사 전체의 위험 정책을 수립·변경하며 자산별, 펀드별 |

| | |
|---|---|
| | 투자 가이드라인을 설정합니다. 위험관리부서는 자산별, 펀드별 거래한도 및 투자한도, 또는 손실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핵심 위험요인을 정의하여 포트폴리오 위험을 측정·관리합니다. 정기적으로 운용부서 및 운용본부장에게 포트폴리오 위험, 기준지수 대비 성과, 요인분석 및 추적오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 이하 관계자들이 사후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결정합니다. |

**(4) 유동성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계획 등**

유동성위험은 시장에서 거래부족이나 장애 등으로 증권 등을 정상적으로 매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가치의 변동위험 및 환매청구에 적절히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따른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유동성위험관리를 위해서 당사는 주기적으로 리스크 항목별 모니터링 및 포트폴리오분석,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연기 및 대량환매 등 비상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대응계획 프로세스를 마련하였으며, 위기 발생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투자대상의 운용성과에 따라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주로 투자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반대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실의 폭은 투자자가 예상치 못한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구조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다음의 투자위험은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고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원금손실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므로 투자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 **주식가격 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므로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가치도 하락하게 됩니다. |
| **금리변동위험** |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

| | |
|---|---|
| |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위험** |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발행회사 또는 단기금융상품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도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증권대여 위험** | 모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증권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투자자산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증권차입 위험** | 모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재산을 증권차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차입 자산을 공매도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 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만큼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유동성 위험** |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파생상품 투자위험** |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 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나. 특수위험**

(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종목)** | 이 투자신탁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의 투자신탁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투자신탁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
|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섹터)** | 이 투자신탁은 일부 산업에 속하는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투자신탁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
| **유동성 제약 종목 일부 편입가능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 상 유동성이 부족한 특정 종목 등에도 투자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가격변동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환매대금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전략수행에 따른 주식시장과의 괴리 위험** |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 및 공급망 재편 흐름을 반영하여 특정 산업 및 국내 제조기업에 상대적으로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상이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 전반에 분산 투자하는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에 비해 특정 종목 또는 산업에 대한 가격 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 **적극적 매매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 이러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동 전략은 일반적으로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기대수준이 시장수익률 수준인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 **피투자펀드** | 모투자신탁은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

| | |
|---|---|
| **보수 부담 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기타비용 외에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함에 따른 보수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성과 달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 기타 투자위험**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의사 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의 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환매에 따른 위험** | 환매청구일과 환매대금결정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결정일까지의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예상하지 못한 가치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 **환매연기위험** | 투자신탁 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 **펀드규모위험** |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이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대량환매 위험** |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 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증권대차 거래 위험** |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타위험** |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예상하지 못한 가치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또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투자위험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그에 따른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증권신고서 작성일 현재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으나, 설정 후 3년 경과 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기준으로 투자위험등급을 재산정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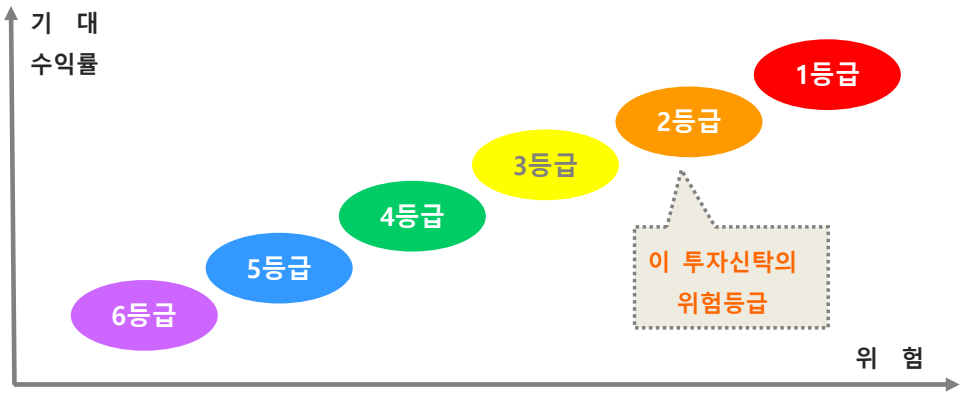


**〈한화자산운용 투자위험등급 기준〉**

상기의 위험등급은 설정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등급 | 신규 및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
| 1등급<br>(매우 높은 위험) |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br>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2등급<br>(높은 위험) |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3등급<br>(다소 높은 위험) |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4등급<br>(보통 위험) |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5등급<br>(낮은 위험) | ① 저위험자산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6등급<br>(매우 낮은 위험) |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br>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br>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br>-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br>-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br>- 상기 분류기준 이외에 투자전략,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레버리지 수준, 환위험(환헷지 50% 미만 등)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 |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 시장위험 등급 기준표 (97.5% VaR 모형* 사용)**

| 구분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2등급 (높은 위험) |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4등급 (보통 위험) | 5등급 (낮은 위험) |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
| 97.5% VaR (일간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 | 50% 초과 | 50% 이하 | 30% 이하 | 20% 이하 | 10% 이하 | 1% 이하 |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값 OO%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OO%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이 위험등급분류는 한화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가. 매입

**(1) 매입방법, 절차,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을 통한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판매시스템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 종류 | 가입자격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 투자자의 가입제한이 없는 수익증권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며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이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판매수수료가 없으며, 투자자의 가입제한이 없는 수익증권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판매수수료가 없으며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이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판매수수료가 없으며,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보험업법 제 108 조 제 1 항 제 3 호의 변액보험계약, 법 시행령 제 14 조제 1 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투자자 및 기금이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 판매수수료가 없으며, 최초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판매수수료가 없으며,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법 시행령 제 103 조에서 규정하는 금전신탁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통해 직접 매입하는 기관투자자가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연금저축)) | 판매수수료가 없으며,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연금저축)) |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P(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Pe(퇴직연금)) |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직접판매(J-e) |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직접판매-개인연금(J-Pe(연금저축)) |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연금저축))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P(퇴직연금))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관련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직접판매-개인연금(J-P(연금저축)) | 집합투자업자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3)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30분 이전 수익증권의 매입을 신청한 경우: 수익증권의 매입을 신청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별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 1영업일 | 2영업일 |
|---|---|
| 자금납입일<br>(오후3시30분 이전) | 수익증권 매입일<br>(기준가격 적용일) |

(나)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수익증권의 매입을 신청한 경우: 수익증권의 매입을 신청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별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1영업일 | 2영업일 | 3영업일 |
|---|---|---|
| 자금납입일<br>(오후3시30분 경과후) | - | 수익증권 매입일<br>(기준가격 적용일) |

※ 판매회사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매입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매입청구를 받은 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 에는 매입 또는 환매의 기준시점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
|---|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의 매입을 신청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증권의 매입을 신청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나. 환매**

**(1) 환매방법, 절차,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을 통해 가입한 경우에는 인터넷홈페이지나 모바일 판매시스템을 통한 환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 중도환매 불가 | 중도해지 시 비용발생 | 중도환매 허용 |
|---|---|---|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O |

**(2)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30분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2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에 판매회사를 통하여 환매금액 지급

| 1영업일 | 2영업일 | 3영업일 | 4영업일 |
|---|---|---|---|
| 환매청구일<br>(오후3시30분이전) | 기준가격<br>적용일 | - | 환매대금 지급 |

(나)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에 판매회사를 통하여 환매금액 지급

| 1영업일 | 2영업일 | 3영업일 | 4영업일 |
|---|---|---|---|
| 환매청구일<br>(오후3시30분경과후) | - | 기준가격<br>적용일 | 환매대금 지급 |

- 판매회사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환매청구를 받은 시간으로 봅니다.
-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에는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
|---|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3)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 30분 [오후 3시 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 30분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17시까지만 매입청구 또는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

1.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구분 | 내용 |
|---|---|
|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 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 좌(1 좌당 1 원)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산정주기 |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에 대한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 공시시기 |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
| 공시장소 |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kr)·판매회사 홈페이지, 판매회사 각 영업점 |
|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판매 보수·수수료 등 종류별로 부과되는 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모투자신탁 기준가격 |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산정되며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과 함께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게시합니다. |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 집합투자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는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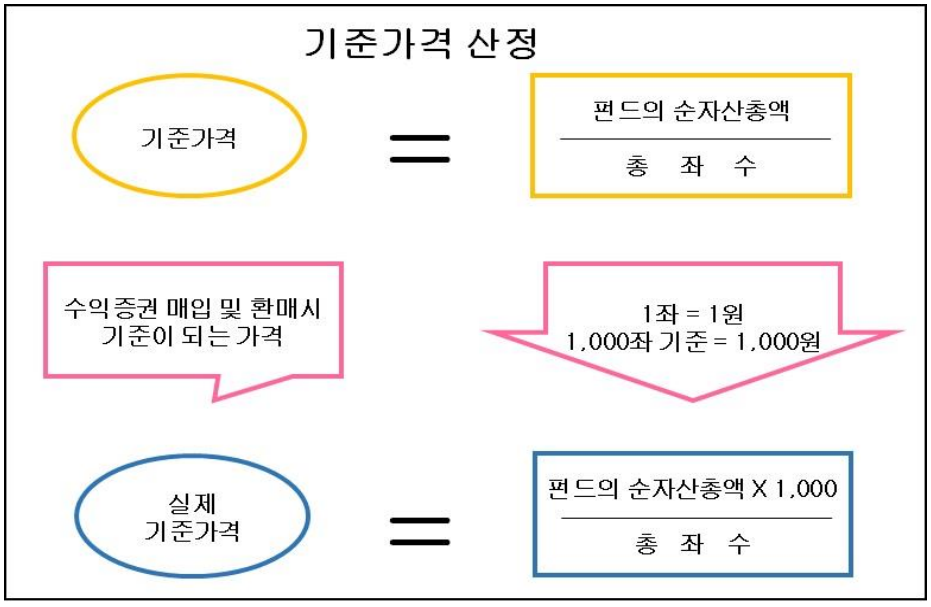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은 관계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주요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산 | 평가방법 |
|---|---|
| ①상장주식 및 주식예탁증권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
| ②장내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 포함)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
| ③상장채무증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 월간 계속 매월 10 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한다)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 등을 기초로 한 가격 |
| ④해외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⑤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다만,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국내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국내주식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은 다음에 따름<br>1. 종가괴리율[주 1)]이 ±2% 범위 이내일 경우: 한국거래소 최종시가<br>2. 종가괴리율이 ±2% 범위 초과일 경우: 평가기준일에 공시된 최종 NAV(순자산가치) |
| ⑥외국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전날의 최종시가 |
| ⑦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비상장주식, 비상장채무증권)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격<br>1. 취득가격<br>2. 거래가격<br>3.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감정평가업자, 투자매매업자 등이 제공한 가격 |
| ⑧장외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br>- 상품의 리턴이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연동되는 파생상품으로서 시초매매가 상품의 만기시까지 유지되는 상품: 발행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2 곳이 제공하는 평균 가격 중 낮은 가격<br>- 상품의 리턴이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연동되는 파생상품으로서, 상품의 만기전에 비정기적으로 매매가 예상되는 상품: 2 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단순산술평균 |
| ⑨외화표시자산의 평가시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제공하는 최근 거래일의 환율정보를 이용한 환율 |

주 1) 종가괴리율: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한국거래소 최종시가/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기준일에 공시된 최종 NAV(순자산가치)-1] × 100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1) 구성: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팀장 등

2) 업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사전자산배분기준에 관한 사항
- 기타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한 사항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명칭(클래스) | 수수료율 | | | |
|---|---|---|---|---|
| | 선취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후취 판매수수료 | 전환수수료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납입금액의 1.0%이내 | - | - | -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납입금액의 0.5%이내 | - | - |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 납입금액의 0.65%이내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연금저축))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연금저축))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P(퇴직연금))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Pe(퇴직연금))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직접판매(J-e)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직접판매-개인연금(J-Pe(연금저축)) | - | - | - |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 | -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 - | - | - | - |

| 명칭(클래스) | 수수료율 | | | |
|---|---|---|---|---|
| | 선취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후취 판매수수료 | 전환수수료 |
| 개인연금(S-P(연금저축)) |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P(퇴직연금))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직접판매-개인연금(J-P(연금저축)) | - | - | - | - |
| 부과기준 | 매입시 | 환매시 | 환매시 | 전환시 |

주 1) 선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 2) 종류 S 수익증권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3 년 미만 환매 시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매수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 까지)별로 환매금액의 0.15% 이내 범위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 3) 각 클래스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은 '제 2 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에서 '나. 종류형 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명칭 (클래스) | 지급비율(연간, %) | | | | | | | | | |
|---|---|---|---|---|---|---|---|---|---|---|
| | 집합투자업자 보수 | 판매회사 보수 | 신탁업자 보수 |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 총 보수 | 동종유형 총보수 | 기타 비용 | 총 보수 비용 | 합성 총 보수 ·비용 | 증권 거래비용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0.70 | 0.63 | 0.02 | 0.01 | 1.36 | 1.37 | - | 1.36 | **1.36** | -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0.70 | 0.315 | 0.02 | 0.01 | 1.045 | 1.05 | - | 1.045 | **1.045** |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 0.70 | 0.39 | 0.02 | 0.01 | 1.12 | - | - | 1.12 | **1.12**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0.70 | 1.00 | 0.02 | 0.01 | 1.73 | 1.60 | - | 1.73 | **1.73**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0.70 | 0.50 | 0.02 | 0.01 | 1.23 | 1.10 | - | 1.23 | **1.23**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 0.70 | 0.59 | 0.02 | 0.01 | 1.32 | - | - | 1.32 | **1.32**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0.70 | 0.03 | 0.02 | 0.01 | 0.76 | - | - | 0.76 | **0.76**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 0.70 | 0.25 | 0.02 | 0.01 | 0.98 | - | - | 0.98 | **0.98**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0.70 | 0.00 | 0.02 | 0.01 | 0.73 | - | - | 0.73 | **0.73** | - |
| 수수료미징구- | 0.70 | 0.70 | 0.02 | 0.01 | 1.43 | - | - | 1.43 | **1.43** | - |

| 명칭<br>(클래스) | 지급비율(연간, %) | | | | | | | | | |
|---|---|---|---|---|---|---|---|---|---|---|
| | 집합투자업자 보수 | 판매회사 보수 | 신탁업자 보수 |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 총 보수 | 동종유형 총보수 | 기타 비용 | 총 보수 비용 | 합성 총 보수 ·비용 | 증권 거래비용 |
| 오프라인-개인연금<br>(C-P(연금저축)) | | | | | | | | | | |
| 수수료미징구-<br>온라인-개인연금<br>(C-Pe(연금저축)) | 0.70 | 0.35 | 0.02 | 0.01 | 1.08 | - | - | 1.08 | **1.08** | - |
| 수수료미징구-<br>오프라인-퇴직연금<br>(C-RP(퇴직연금)) | 0.70 | 0.65 | 0.02 | 0.01 | 1.38 | - | - | 1.38 | **1.38** | - |
| 수수료미징구-<br>온라인-퇴직연금<br>(C-<br>RPe(퇴직연금)) | 0.70 | 0.325 | 0.02 | 0.01 | 1.055 | - | - | 1.055 | **1.055** | - |
| 수수료미징구-<br>온라인직접판매<br>(J-e) | 0.70 | 0.08 | 0.02 | 0.01 | 0.81 | - | - | 0.81 | **0.81** | - |
| 수수료미징구-<br>온라인직접판매-<br>개인연금<br>(J-Pe(연금저축)) | 0.70 | 0.05 | 0.02 | 0.01 | 0.78 | - | - | 0.78 | **0.78** | - |
| 수수료후취-<br>온라인슈퍼(S) | 0.70 | 0.27 | 0.02 | 0.01 | 1.00 | - | - | 1.00 | **1.00** | - |
| 수수료미징구-<br>온라인슈퍼-<br>개인연금<br>(S-P(연금저축)) | 0.70 | 0.21 | 0.02 | 0.01 | 0.94 | - | - | 0.94 | **0.94** | - |
| 수수료미징구-<br>온라인슈퍼-<br>퇴직연금<br>(S-RP(퇴직연금)) | 0.70 | 0.20 | 0.02 | 0.01 | 0.93 | - | - | 0.93 | **0.93** | - |
| 수수료미징구-<br>오프라인직접판매-<br>개인연금<br>(J-P(연금저축)) | 0.70 | 0.07 | 0.02 | 0.01 | 0.80 | - | - | 0.80 | **0.80** | |
| 지급시기 | 매 3 개월 후급 | 매 3 개월 후급 | 매 3 개월 후급 | 매 3 개월 후급 | 매 3 개월 후급 | 사유 발생시 (주 1 참조) | 매 3 개월 후급 | - | 매 3 개월 후급 | 사유 발생시 (주 2 참조) |

주1) 기타비용은 회계감사비용,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
|---|---|
| 기타비용 | 신규 투자신탁으로 해당사항 없음 |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
|---|---|
| 증권거래비용 | 신규 투자신탁으로 해당사항 없음 |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합성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 (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금융비용은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금융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금융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
|---|---|
| 금융비용 | 신규 투자신탁으로 해당사항 없음 |

주6)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관련 비용의 종류 및 내역**

① 기타비용 종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감사보수, 기타위탁보수(보관대리인보수, 지급대리인보수), 대차거래비용(대차관련수수료), repo거래비용(repo 수수료), 기타비용(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② 증권거래비용 종류: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음)

③ 금융비용 종류: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단위: 천원)〉**

| 구분 | 1 년후 | 2 년후 | 3 년후 | 5 년후 | 10 년후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238 | 383 | 535 | 863 | 1,836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157 | 268 | 386 | 639 | 1,391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 179 | 299 | 425 | 695 | 1,500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177 | 364 | 559 | 980 | 2,230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126 | 258 | 397 | 697 | 1,586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 135 | 277 | 427 | 748 | 1,702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78 | 160 | 246 | 430 | 980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 100 | 206 | 317 | 555 | 1,263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75 | 153 | 236 | 413 | 941 |

| | | |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연금저축)) | 147 | 300 | 462 | 810 | 1,844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연금저축)) | 111 | 227 | 349 | 612 | 1,392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P(퇴직연금)) | 141 | 290 | 446 | 782 | 1,779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Pe(퇴직연금)) | 108 | 222 | 341 | 598 | 1,360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직접판매(J-e) | 83 | 170 | 262 | 459 | 1,044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직접판매-개인연금(J-Pe(연금저축)) | 80 | 164 | 252 | 442 | 1,006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103 | 210 | 323 | 566 | 1,289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연금저축)) | 96 | 198 | 304 | 532 | 1,212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P(퇴직연금)) | 95 | 195 | 301 | 527 | 1,199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직접판매-개인연금(J-P(연금저축)) | 82 | 168 | 259 | 453 | 1,031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수수료선취-오프라인(A)는 1.0%, 수수료선취-온라인(A-e)는 0.50%,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는 0.65%로 가정) 및 기타비용을 포함한 합성 총보수 및 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종류S 수익증권은 환매시점에 후취판매수수료 부담여부 및 후취판매수수료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류S 수익증권의 후취판매수수료는 반영하지 않고 작성이 되었습니다.

**[투자신탁 관련 비용]**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집합투자업자의 귀책에 따른 소송은 제외한다)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다. 보수 및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

다음 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 제1항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수취하는 투자신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기준지표 | 보수 산정방식 | 한도 (%) | 산출 주기 | 지급 시기 | 지급내역 (직전 회계연도 기준, %) | | | |
|---|---|---|---|---|---|---|---|---|
|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 - | - | - | - | - | - | - | - |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 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매년 결산. 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 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 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 (2) 상환금 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나. 과세

####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

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투자대상 자산(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로 인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는 투자대상 자산(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되므로 수익자 입장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및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P(연금저축), C-Pe(연금저축), J-P(연금저축), J-Pe(연금저축), S-P(연금저축) 수익증권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납입요건 | 가입기간 5년 이상, ① 및 ②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br>① 연 1,800만원 한도(퇴직연금 가입자부담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br>②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 중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 |
| 연금 수령요건 |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br>(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

<table>
<tr><td>세액공제</td><td>
<table>
<tr><th>종합소득과세표준<br>(근로소득만 있는 경우,<br>총급여액)</th><th>세액공제 한도<br>(퇴직연금 포함)</th><th>세액공제율</th></tr>
<tr><td>4,500 만원 이하<br>(5,500 만원 이하)</td><td rowspan="2">600 만원<br>(900 만원)</td><td>16.5%</td></tr>
<tr><td>4,500 만원 초과<br>(5,500 만원 초과)</td><td>13.2%</td></tr>
</table>
- 단, 위 납입요건의 ②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 금액의 10%(300 만원 한도)내에서 위 표의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당해연도 추가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인정됨<br>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함<br>
- 위 세액공제 한도는 2023 년 1 월 1 일 이후 납입금액부터 적용됨</td></tr>
<tr><td>연금수령시 과세</td><td>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되며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br>단,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 적용</td></tr>
<tr><td>분리과세 한도</td><td>1,500 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br>1,500 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단, '24.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td></tr>
<tr><td>연금외 수령시 과세</td><td>기타소득 분리과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br>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td></tr>
<tr><td>해지 가산세</td><td>없음</td></tr>
<tr><td>부득이한 사유로<br>인한 인출<br>(연금외수령)</td><td>천재지변<br>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br>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에 한함)의 3 개월 이상 요양<br>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td></tr>
<tr><td>부득이한 사유로<br>인출시 과세</td><td>연금소득 분리과세 5.5%~3.3%(지방소득세 포함)</td></tr>
<tr><td>연금계좌 승계</td><td>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td></tr>
</table>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종류 C-RP(퇴직연금), C-RPe(퇴직연금), S-RP(퇴직연금) 수익증권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금계좌 세액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 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다만,「소득세법」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이익분배금의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 체계**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형태에 따라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의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수익자가 얻은 소득은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시점에서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수령시 퇴직/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 해당사항 없음**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억좌, 억원):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해당사항 없음**

#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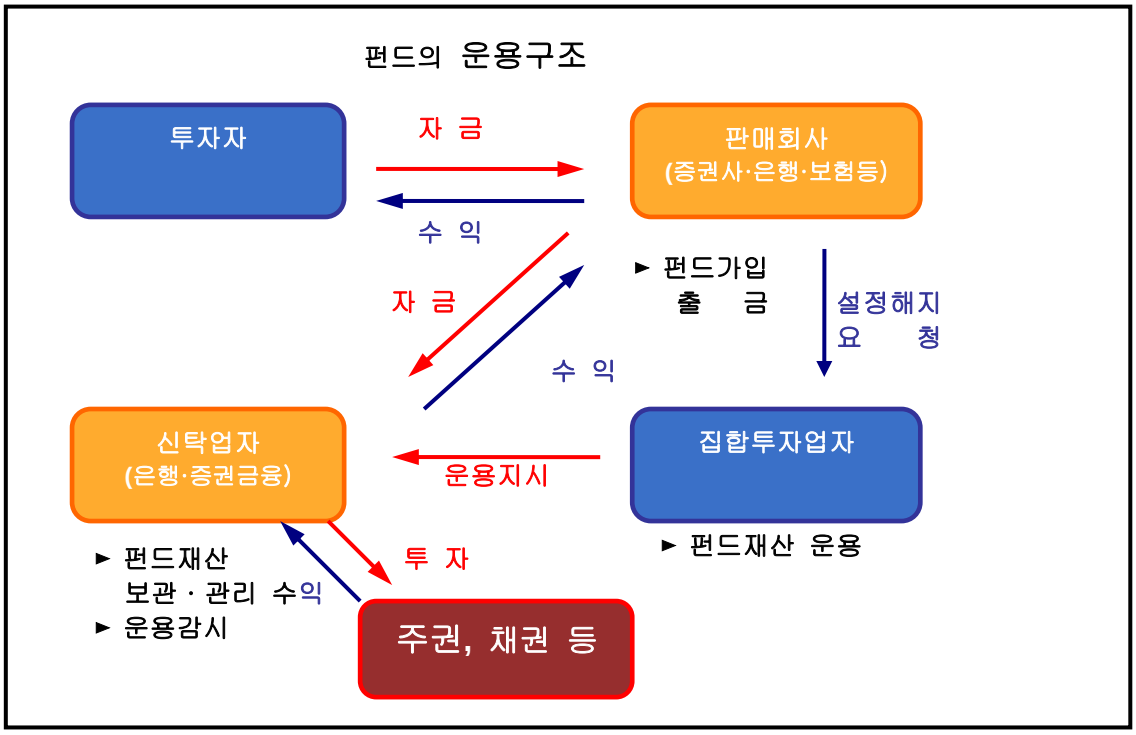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개요

| 회사명 |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 로 50 한화금융센터 63<br>(전화) 02-6950-0000 | |
| 회사 연혁 | 2011.09.19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출범<br>(한화투자신탁운용과 푸르덴셜자산운용의 합병)<br>2018.06.04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 집합투자업 사업부문 분할합병 | |
| | 푸르덴셜자산운용 | 1982.06 국민투자신탁 설립<br>1998.02 국민투자신탁운용 설립<br>(국민투자신탁에서 운용조직 분리)<br>1999.02 현대투자신탁운용으로 상호 변경<br>2004.02 미국 Prudential Financial 자회사로 편입,<br>푸르덴셜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br>2010.06 한화그룹 계열사로 편입 |
| | 한화투자신탁운용 | 1988.04 제일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br>1996.08 한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
| 자본금 | 1 조 700 억원 | |

###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 재무상태표 | | | 손익계산서 | | |
|---|---|---|---|---|---|
| 항목 | 제37기 (24.12.31) | 제36기 (23.12.31) | 항목 | 제37기 (24.1.1 ~24.12.31) | 제36기 (23.1.1 ~23.12.31) |
| 자 산 | | | 영업수익 | 151,890 | 131,627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0,424 | 64,128 | 영업비용 | 105,418 | 97,521 |
| 예치금 | 2,517 | 10,704 | 영업이익 | 46,472 | 34,106 |
|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313,830 | 177,506 | 영업외수익 | 45,109 | 5,01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18,314 | 25,992 | 영업외비용 | 2,965 | 1,767 |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 1,005,522 | 1,042,559 | 법인세차감전 | 88,616 | 37,357 |
| 대출채권 | 2,787 | 2,340 | 법인세비용 | 21,040 | 7,675 |
| 유형자산 | 15,906 | 13,008 | **당기순이익** | **67,576** | **29,682** |
| 무형자산 | 2,725 | 2,995 | | | |
| 이연법인세자산 | 3,959 | 10,828 | | | |
| 기타금융자산 | 64,408 | 63,789 | | | |
| 기타자산 | 1,710 | 1,688 | | | |
| **자 산 총 계** | **1,482,102** | **1,415,537** | | | |
| 부 채 | | | | | |
| 예수부채 | 2,320 | 10,691 | | | |
| 충당부채 | 1,721 | 1,151 | | | |
| 순확정급여부채 | -1,295 | -1,912 | | | |
| 당기법인세부채 | 8,663 | 3,826 | | | |
| 리스부채 | 11,649 | 9,550 | | | |
| 기타금융부채 | 21,741 | 16,020 | | | |
| 기타부채 | 1,017 | 1,001 | | | |
| **부 채 총 계** | **45,816** | **40,327** | | | |
| 자 본 | | | | | |
| 자본금 | 1,070,000 | 1,070,000 | | | |
| 기타불입자본 | 3,459 | 3,459 | | | |
| 기타자본구성요소 | -8,507 | -2,008 | | | |
| 이익잉여금 | 371,334 | 303,758 | | | |
| **자 본 총 계** | **1,436,286** | **1,375,209** | | | |

| | | | | | |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482,102 | 1,415,537 | | | |

**라. 운용자산 규모** (2026.03.03 현재, 단위: 억원)

| 구분 | 증권집합투자기구 | | | | | | | 부동산 | 특별자산 | 혼합자산 | 단기금융 | 총 계 |
|---|---|---|---|---|---|---|---|---|---|---|---|---|
| | 주식형 | 채권형 | 혼합형 | 계약형 | 재간접형 | 파생형 | 기타 | | | | | |
| 수탁고 | 104,334 | 65,935 | 11,121 | 0 | 52,111 | 23,482 | 0 | 39,125 | 115,693 | 12,114 | 94,745 | 518,664 |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가. 신탁회사

**(1)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 100)<br>1588-1599 |
| 홈페이지 | www.standardchartered.co.kr |

**(2) 주요업무**

(가)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나)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 269 조제 4 항에서 정하는 사항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 (1) 회사의 개요

| | |
|---|---|
| **회사명** | 하나펀드서비스㈜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br>(02) 6714-4600 |
| **홈페이지** | www.hanais.com |

### (2) 주요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 업무
-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1) 회사의 개요

| 구 분 | 한국자산평가 | NICE P&I | KIS 자산평가 | FN 자산평가 |
|---|---|---|---|---|
| 주소<br>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br>율곡로 75<br>(02)2251-13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br>국회대로 70 길 19<br>(02)398-39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br>국제금융로 6 길 38<br>(02)3215-1400 | 서울특별시 강서구<br>마곡중앙 2 로 61<br>(02)721-5300 |
| 홈페이지 주소 | www.koreaap.com | www.nicepni.com | www.bond.co.kr | www.fnpricing.com |

###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법령 및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상기의 결의방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

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보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 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 · 서류의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 ·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 · 집합투자규약 ·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 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 · 분석 · 확인 ·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의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신정동) T. (02)2192-1114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3) 및 4)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상기 3) 및 4)에 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한화 K제조핵심PLUS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총회 및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을 적용하지 않고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을 '한화 K방산조선원전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합니다.
(2) 투자신탁이 최초설정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의해지' 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방법 이외에도 '당사 운용중인 다른 투자신탁과의 합병' 또는 '다른 모투자신탁으로의 자산 이전' 등의 방법으로 소규모 투자신탁을 정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정리방법 및 시기를 정할 계획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결산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보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

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2)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해지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기준일)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집합투자기구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 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집합투자기구가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

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법 제247조 제5항의 확인사항
5) 법 시행령 제27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가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신탁업자가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신탁업자,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3)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변경된 기준가격이 처음 기준가격 대비 1000분의 1을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에 한함)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 · 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으로 미치는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 구 분 |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 | | | |
|---|---|---|---|---|---|
| 가.증권거래 | 평가항목 | 자산분석서비스의 유용성 (운용 기여도) | 주문집행능력 | 비용 또는 수익 | 합계 |
| | 항목 | 60% | 20% | 20% | 100% |

| | | | | | |
|---|---|---|---|---|---|
| 나.장내파생상품 거래 | 가중치 | | | | |
| | * 각 평가항목은 5척도(A, B, C, D, E)로 평가<br>* 각 등급별 투자중개업자의 비율은 A(15%), B(20%), C(30%), D(20%), E(15%)를 원칙, 상하 5% 범위 이내 조정<br>* 각 평가자가 평가한 5척도의 환산점수는 A(10점), B(8점), C(6점), D(4점), E(2점)<br>* 각 평가항목별 평가치를 항목가중치로 가중 평균하여 합산.<br>* 각 거래 자산별로 일정한 수의 범위 이내에서 거래 가능한 투자중개업자로 선정 | | | | |

* 증권, 장내파생상품 중 일부 자산은 상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선정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가. 고유재산 투자**

| | |
|---|---|
| 투자주체 |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
| 투자목적 | 투자자와 운용사간 펀드 성과에 대한 공유장치 마련 |
| 투자시기 | 최초설정일 |
| 투자금액 | 2억원 |
| 투자기간 |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 이상.<br>다만, 3년 이전에 투자신탁이 종료하는 경우 신탁계약서상 존속기한까지 |
| 투자금 회수계획 | 투자기간 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의무투자금 회수 예정 |

주1)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금액은 상기의 의무투자금액 외 추가로 납입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상기의 투자기간 이전에 시장상황에 따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의 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당연 해지사유 발생
2) 소규모 펀드로서 임의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해산하는 경우
4)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신규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 설정액이 15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5)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펀드를 이전 받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사펀드 투자 의무를 승계
주3)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며, 분할 회수시 회차별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며, 1회당 회수 금액은 투자금의 50% 이내로 할 예정입니다. 다만,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도 가능합니다.
주4) 상기의 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5) 투자금 환매시에는 자산운용보고서상 환매결과를 기재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할 예정입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붙임] 용어풀이

| | |
|---|---|
| 금융투자상품 |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
| 집합투자 |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 펀드 |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
| 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
| 수익증권 |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순자산 |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
|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
| 개방형 |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추가형 |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모자형 |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
| 종류형 |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
| 기준가격 |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 자본이득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
| 배당소득 | 펀드 운용시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금을 말합니다. |
| 보수 |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선취수수료 |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후취수수료 |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환매수수료 |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
| 설정 |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
| 해지 |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수익자총회 |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비교지수 | 벤치마크(Benchmark, BM)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비중 등 투자전략을 고려하여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액티브(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변경 및 투자자에게 공시 될 예정입니다. |
| 참조지수 | 비교지수와는 다르게 해당 투자신탁의 단순 성과비교시 참조를 위한 것으로서, 해당 투자신탁이 반드시 참조지수와 유사한 투자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수익자에게 참조지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과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지수는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
| 레버리지효과 |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 선물환거래 |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
| 금리스왑 |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
| 성과보수 |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
| 신주인수권부 사채 |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
|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
| 전환사채 |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
| 주식워런트 |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